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회)	
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집합투자기구의 구조, 전용저축의 가입·운용, 과세특례 절차 및 사후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세청,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24. ~ 5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8항제1호가목 중 “수”를 “수의 합”으로, “한다)의 합”을 “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수”를 “수의 합”으로, “한다)의 합”을 “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수”를 “수의 합”으로, “한다)의 합”을 “한다)”로 한다.

제79조의7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(제11조의2제8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1명은 1명으로 하여 계산한다.

제93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3조의14(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 ①

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”(이하 이 조에서 “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”라 한다)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 금지형집합투자기구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의

2호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

② 법 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”이란 「한국산업은행법」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·지분·채권(대출채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③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.

④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·설립일·영업인가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날까지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투자 대상에 투자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91조의28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(이하 이 조에서 “전용저축”이라 한다)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
2.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

⑥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는 납입한 금액의 순누계액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

납입 한도	=	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- 인출한 납입원금의 누계액
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⑦ 전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“가입자”라 한다)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의 원금부터 인

출한 것으로 본다.

⑧ 법 제91조의28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6항의 투자 기간은 각 전용
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(이하 이
조에서 “증권등”이라 한다)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 다만,
증권등을 모두 양도 또는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 그 날부터 기
산한다.

⑨ 법 제91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
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

1. 가입자의 사망 또는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이주
2.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(일
부 환매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
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가. 천재지변
나. 가입자의 퇴직
다. 사업장의 폐업
라.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
병의 발생
마. 법 제93조의28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저축
취급기관”이라 한다)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
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⑩ 제9항에 따른 사유로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

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⑪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⑫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(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)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⑬ 제1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통보에 대한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는 제12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.

⑭ 전용저축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

대통령령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제1항 중 “제26조의8제4항제1호”를 “제26조의8제4항제1호 및 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”을 “제26조의8제7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(제60조제17항, 제60조의2제21항, 제61조제6항, 제99조의8제6항, 제116조의14제4항, 제116조의15제7항, 제116조의21제6항, 제116조의25제5항, 제116조의26제6항,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같은 항의 개정규정을 제26조의8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2(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~ ⑦ (생략)	제11조의2(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, 청년 상시근로자 수 및 연구개발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.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.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,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.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,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.	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
1. 계산식	1. ----
가. 상시근로자 수: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(100분의 1 미만	가. ----- ----- ---- <u>수의 합</u> -----
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	----- 한

다)의 합

나. 청년 상시근로자 수: 청년
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
에 따라 계산한 수(100분
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
것으로 한다)의 합

다.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
근로자 수: 연구개발 우수
인력 상시근로자별 다음
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
(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
없는 것으로 한다)의 합

2. (생략)

⑨ ~ ⑪ (생략)

제79조의7(사회적기업에 대한 법
인세 등의 감면) ① 법 제85조
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
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
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
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.
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다)

나. -----

----- 수의 합-----

----- 한다)

다. -----

----- 수
의 합-----
----- 한다)

2. (현행과 같음)

⑨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79조의7(사회적기업에 대한 법
인세 등의 감면) ① -----

다만,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
서에 따른 근로자(제11조의2제8
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
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1명
은 1명으로 하여 계산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93조의14(국민참여형 국민성장
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
특례)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
2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집합투자기구”(이하 이 조
에서 “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”
라 한다)란 다음 각 호의 요건
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
를 말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」 제230조제1항에
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
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0조제
1항제5의2호에 따른 사모투자
재간접집합투자기구

②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
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
자 대상”이란 「한국산업은행
법」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
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
업관련기업의 주식·지분·채권
(대출채권을 포함한다)을 말한
다.

③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
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비율”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.

④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 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구는 설정일·설립일·영업인가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날까지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투자 대상에 투자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91조의28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(이하 이 조에서 “전용저축”이라 한다)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

2.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

⑥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는 납입한 금액의 순누계액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

⑦ 전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“가입자”라 한다)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

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.

⑧ 법 제91조의28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6항의 투자 기간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(이하 이 조에서 “증권등”이라 한다)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 다만, 증권등을 모두 양도 또는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 그 날부터 기산한다.

⑨ 법 제91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

1. 가입자의 사망 또는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이주
2.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(일부 환매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 - 가. 천재지변

나. 가입자의 퇴직

다. 사업장의 폐업

라.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
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
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

마. 법 제93조의28제4항에 따
른 저축취급기관(이하 이
조에서 “저축취급기관”이
라 한다)의 영업의 정지,
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
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⑩ 제9항에 따른 사유로 양도하
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
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
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
하여야 한다.

⑪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
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
하려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
근로소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
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
야 한다.

⑫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
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
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
연도(저축 가입자에 대하여

	<u>「소득세법」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)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⑬ 제1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통보에 대한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는 제12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.</u> <u>⑭ 전용저축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</u>
대통령령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(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<u>제26조의8제4항 제1호</u>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② (생략) ③ <u>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</u>의	대통령령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(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<u>제26조의8제4항 제1호 및 제6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26조의8제7항</u>-----

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
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132